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호	3563
-----------	------

2026년 4월 22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윤영희 의원 외 18명

나. 제안일자 : 2026년 3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26년 3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335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6년 4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윤영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 및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실제 도로와 한강공원 등에서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운행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교통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누구든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를 특정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마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6. 4. 3. ~ 2026. 4. 7.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1)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보행자전거과-5638호(2026. 4. 13.)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자전거는 자전거법상 제동장치가 있어야 하며,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를 단속·계도하고 있음
- 금번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 제한 관련 조례 개정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함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구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²⁾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픽시 자전거(Fixed Gear bicycle)란 기어가 고정된³⁾ 자전거로 관련 법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해야 함⁴⁾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사회적 문제들⁵⁾⁶⁾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나 '25년 8월 경찰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2) 픽시 자전거((fixed-gear bike), 일명 픽시(fixie) 출처: 나무위키

- 경륜 자전거에서 유래된 포장도로용 자전거의 한 갈래로 기어가 고정되어 있는 자전거

3) 고정기어(Fixed Gear) : 페달이 항상 뒷바퀴와 함께 회전할 수 있도록 프리휠 메커니즘이 없는 구동력을 갖춘 자전거의 한 종류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5) 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중학생 사망... '픽시 자전거' 뒤통수 조선일보(2025.08.18.)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주의보...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 4배 mbn 뉴스(2025.09.05.)

6) [단독] 픽시자전거 반복 폭주에...“못 참겠다” 부모 첫 입건 SBS 뉴스(2026.03.18.)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7)의 “차”로 유권해석을 하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8)에 따라 안전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 바 있음

- 서울시도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⁹⁾ 제정을 통해 픽시 자전거의 이용안전을 증진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¹⁰⁾에 따른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¹¹⁾

7)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8)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9)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3154), 본회의 의결(2025.12.23.) 처리결과(가결)

10)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通行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1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通行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通行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에 따른 자전거도로 및 시장이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하는 구역 등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임

-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¹²⁾에 따른 제동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도로교통법」 제48조¹³⁾에서 규정하는 안전운전 의무도 이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운행 제한 지역 규정을 통해 청소년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주요 지역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증진할 수 있으나 향후 운행 제한 구역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실질적인 처분 조치는 어렵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등과 단속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법적 근거를 함께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임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1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3)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회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563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3월 25일

발 의 자: 운영회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곽향기, 김경훈,
김길영, 김원중, 김원태,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박성연, 심미경, 유만희,
이병윤, 이숙자, 이은림,
이종태, 이효진, 황철규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 및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실제 도로와 한강공원 등에서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운행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교통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 제5조) 누구든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를 특정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마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누구든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아니한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강공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5조(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p>
<p><신 설></p>	<p>누구든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아니한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p>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른 한강공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p><u>제5조</u> ~ <u>제10조</u> (생 략)</p>	<p><u>제6조</u> ~ <u>제11조</u> (현행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p>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5조(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의 신설을 통해 픽시 자전거 이용자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자전거 운행을 금지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문으로,
- 이는 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경 명

☎ 02-2180-7954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